



제437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회운영위원회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 강화〉

■ 김태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097호)

2026. 7.

국 회 운 영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김경호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상임위원장 교체안 도입	3
2. 상임위원장 직무대행 제도 개선	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김태년 · 이광희 · 김한규 · 한준호 · 홍기원 · 이정현
서영석 · 김 윤 · 이주희 · 조인철 · 문금주 · 김 현
정일영 · 민홍철 · 김우영 · 박정현 · 이상식 · 박홍배
손명수 · 남인순 · 서삼석 · 이수진 · 민형배 · 송재봉
오세희 · 김남근 · 김용만 · 김원이 · 박 정 · 소병훈
조정식 · 최혁진 · 민병덕 · 송옥주 · 김영호 · 어기구
김기표 · 윤종균 · 김영배 · 한민수 · 박희승 · 곽상언
김문수의원(43인)

2. 제 안 일 : 2026. 4. 3.

3. 회 부 일 : 2026. 4. 4.

※ 의안번호 : 1809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회는 국민주권의 원리에 따라 국민을 대표하여 입법권을 행사하는 기관으로서,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률안 심사와 정책 논의가 이루어지는 구조임. 따라서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은 국회의 기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임.

그러나 최근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운영 과정에서는 위원장의 자의적인 의사일정 운영으로 회의 개최가 지연되거나, 법률안 심사가 정

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 이로 인해 민생과 직결된 입법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의 책임성과 신뢰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현행법은 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규정하고 있으나, 회의 개최 거부나 의사진행 기피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에 대한 실효적인 견제 장치가 부족하여, 위원회 운영이 특정 개인의 판단에 좌우될 수 있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이에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지연하는 경우, 일정 요건 하에 상임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회의 개최 요구가 있을 경우 일정 기간 내 회의를 개최하도록 의무를 명확히 하는 한편,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의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 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이러한 제도적 장치를 소위원회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위원회 전반의 의사일정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상임위원회 운영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의사일정 지연을 방지함으로써, 일 잘하는 국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상임위원장 교체안 도입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하는 등의 경우,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및 과반수의 찬성으로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41조의2 신설 등).

[표-1]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1조의2(상임위원장의 교체) ① <u>상임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상임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하는 안건(이하 “교체안”이라 한다)을 발의할 수 있다.</u> 1. <u>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u> 2. <u>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제3호에 따른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u> 3. <u>제50조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u>

현행	개정안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생략) <신설> <신설>	<u>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u> 4. <u>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안 심사를 현저히 지연한 경우</u> ② <u>교체안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u> ④ <u>제52조제3호에 따른 개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은 요구가 있는 날부터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간사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현행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도록 하고 있음. 상임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되며,¹⁾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정리권, 질서유지권 및 사무감독권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음.²⁾

1)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장은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선임된 해당 상임위원 중에서 임시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제17조(임시의장 선거) 임시의장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다수득표를 당선자로 한다.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현행법은 위원회의 기능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장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³⁾

그러나 이는 직무를 일시적으로 대행하게 하는 것일 뿐, 상임위원장이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위원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 그 책임을 묻거나 위원장의 지위를 변동시킬 수 있는 별도의 수단은 두고 있지 않음.

그동안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보아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위원장에 대한 불신임 또는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방식이 사용되었으나,⁴⁾ 이러한 결의안을 통한 의사 표명은 위원장의 사임을 압박하는 효과 외에 그 지위에 대한 법적 효력은 없다는 한계가 있음.

[표-2] 상임위원장 사퇴촉구·불신임 결의안 발의 현황

대 별	의안명(발의자)	발의일자	처리결과
제9대	법제사법위원장(장영순)·외무위원장(최영희) 사퇴권고결의안(송원영의원 외 54인)	1977.10.21.	임기만료폐기
제14대	국회농림수산위원장(정시채)사퇴권고결의안 (강수림의원 외 93인)	1992.11.11.	철회
제16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운수)사퇴권고결의안 (홍사덕의원 외 147인)	2003.10.21.	임기만료폐기

2) 「국회법」 제4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간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3) 「국회법」 제50조(간사) ⑤ 위원장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의원 10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고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함.

대 별	의안명(발의자)	발의일자	처리결과
제18대	외교통상통일위원장(박진) 사퇴 촉구 결의안 (문학진의원 외 82인)	2009.4.24.	임기만료폐기
	환경노동위원장(추미애) 사퇴 촉구 결의안 (조원진의원등 19인)	2009.7.1.	임기만료폐기
제20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신상진) 불신임 결의안(박홍근의원 등 14인)	2017.2.20.	임기만료폐기
제21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정청래) 사퇴 촉구 결의안(박성중의원 등 11인)	2022.9.8.	임기만료폐기

이에 개정안은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위원회 개회 요구⁵⁾가 있는 경우 상임위원장은 원칙적으로 ‘3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회하도록 그 기한을 명시하고,

위원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등의 경우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상임위원장 교체안을 발의·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의사 절차를 주관하고 안건 심의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상임위원장의 직무 수행에 관한 책임성을 확보하고, 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를 도모하려는 취지임.

다만, 첫째로 기존의 사퇴촉구 결의안이 국회운영위원회의 심사 대상인 것과 달리 개정안에 따른 상임위원장 교체안은 해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해석되는데, 이러한 교체안은 위원장 본인의 신분에 관한 안건이므로 위원장이 그 심사 회의를 직접 주관하는 것은 절차

5)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이에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의 심사⁶⁾와 유사하게 교체안을 심사하는 회의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을 제척하고 위원장 직무대행의 개시 사유로 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둘째,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선출되고 사임 시에도 본회의의 동의를 받는다는 점에서⁷⁾ 그 교체에 대해서도 본회의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는데,

개정안은 상임위원장 교체안이 위원회에서 가결된 이후의 처리 절차 및 법적 효과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교체안은 일반적인 결의안과 동일하게 다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이 경우 기존의 사퇴 촉구 결의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셋째, 안 제49조제4항과 관련하여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하면서 개회일시를 요구일부터 3일이 지난 시점으로 특정하는 경우에는 요구서상의 개회일시에 따르도록 예외를 두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참고로, 현재 상임위원장의 직무 태만 등에 대한 제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 계류

6) 「국회법」 제32조의5(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안건 등에 대한 회피) ①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 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 과정에서 제32조의4제1항의 신고사항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그 사안 또는 안건에 대한 표결 및 발언의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7) 「국회법」 제41조(상임위원장) 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중이므로, 이를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표-3] 유사 취지의 개정안 발의 현황

개정안	발의일	주요내용
민형배의원안 (제2204095호)	2024.9.19.	◦ 의장에 대한 불신임 의결(재적의원 과반수 발의, 3분의 2 이상 찬성) ◦ 부의장·상임위원장에 대한 해임 의결(재적의원 5분의 2 이상 발의, 5분의 3 이상 찬성) → <u>가결 시 해임됨</u>
황운하의원안 (제2204258호)	2024.9.25.	◦ <u>상임위원장에 대한 사임 요구</u>(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발의, 과반수 찬성) → <u>가결 시 사임하여야 함</u>

2. 상임위원장 직무대행 제도 개선

개정안은 상임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사유에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추가하고, 이 경우 의장이 직권으로 개회일시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소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및 제57조).

[표-4]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간사) ① ~ ④ (생략) ⑤ 위원장이 <u>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u>	제50조(간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u> ----- ----- -----

현행	개정안
는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의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 1. 제49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는 경우 2. 제4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52조 제3호에 따른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지 아니하여 위원회의 활동을 어렵게 한 경우 ⑥ 의장은 제5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의 간사 중에서 소속 의원수가 많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③ (생략) <신 설>	제57조(소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소위원회가

현행	개정안
<신설> ④ ~ ⑨ (생략)	활동하기 어려울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제3항에 따른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여 소위원회가 활동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속되지 아니한 교섭단체 소속 위원 중 최다선(最多選)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소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위원회의 개최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⑥ ~ ⑪ (현행 제4항부터 제9항까지와 같음)

현행법은 상임위원장이 위원회의 개최 또는 의사진행을 거부·기피하거나 직무대리자를 지정하지 않아 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

운 경우, 위원장이 속하지 않은 교섭단체 소속 간사 중 소속 의원 수가 많은 교섭단체의 간사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실제 규정의 적용 시에는 위원장이 고의로 개회 또는 의사 진행을 거부·기피하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논란이 발생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위원장이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여 보다 객관적인 사유를 추가하고,

이 경우 의장이 개회일시를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원장이 개회 의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임위원회가 차질 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임.

한편, 소위원회의 경우 소위원장의 직무대리에 관한 규정⁸⁾은 있으나 직무대행에 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바,⁹⁾ 상임위원장의 직무대행 방식에 준하여 소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소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다만, 개정안에 따르더라도 위원장의 개회 또는 의사진행 거부·기피 등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하므로 이를 둘러싼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고,

8)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9) 다만, 위원회의 운영 방식은 원칙적으로 소위원회에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은 소위원장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음.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 ⑧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소위원회는 축조심사(逐條審査)를 생략해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상 위원회의 개회 사유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에도¹⁰⁾ 의장에게 직무대행 시 개회일시 지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¹¹⁾

문 의 처
02)6788-5014

10) 「국회법」 제52조(위원회의 개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개회한다.

1.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
2. 의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11) 법제적인 측면에서도 안 제50조제5항은 특정 요건 해당 시 직무대행의 개시를, 같은 조 제6항은 의장의 직무대행자 지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원장의 개회 요구 미이행’이라는 요건이 충족되면 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이 당연히 개시되는 것이므로 제6항의 내용은 적용의 여지가 없게 됨. 이는 안 제5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위원장 직무대행의 경우에도 동일함.